



2024년 처우향상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경기사회복지협의회

2024. 9. 30.

김 지 영

- 일 시 : 2024. 9. 20.(금) 10:30
- 장 소 : 경기도사회복지사회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총 6명(위원 4명, 사무처 2명) *불참 위원 없음
- 위 원 : 김도묵 위원장, 이혜주 부위원장, 문예진 위원, 이민건 위원
- 사무처 : 허윤범 사무처장, 김지영 주임

구분

회의 내용

○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횟수 조항

- 회의에서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지회와 소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안건이나 내용이 다루어졌다면 점수 부여.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 시군 자체사업 중 상해보험비 외 3개는 어느 곳에도 편성되지 않았음. 하지만 해당 사업은 종사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반영이 필요함.

구분	자체사업 내용
상해보험비	→ 처우개선지원예산
보수교육비	→ 교육, 행사 등
역량개발비, 복리후생비	→ 처우수당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래 표 내용 참고.

예산 구분	내용
A 지자체의 ‘사회복지 행사 상패 제작’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편입.
B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교육, 행사 등’ -> ‘인권보호 사업’ 으로 이동
C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 공모수당’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D 지자체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E 지자체의 ‘사회복지사회협의회 운영비 지원’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주요 내용

구분	회의 내용																												
	○ 처우개선정책 평가 지표 공개 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td><td>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공개</td></tr> <tr> <td>2</td><td>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비공개</td></tr> <tr> <td>3</td><td>A그룹~E그룹으로 구분</td></tr> <tr> <td>4</td><td>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지자체 3~5군데만 공개</td></tr> <tr> <td>5</td><td>별도 그룹은 지정하지 않고 토론회 자료집에 처우개선 모니터링 지표 자료 삽입</td></tr> <tr> <td colspan="2">공개방식에 대한 위원 의견</td></tr> <tr> <td>의견1</td><td>처우개선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을 보완하자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상위그룹만 공개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td></tr> <tr> <td>의견2</td><td>A그룹~E그룹까지 등급을 나눈 후, 순위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td></tr> <tr> <td>의견3</td><td>처우개선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 평균 미만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td></tr> </tbody> </table> - 여러 회의를 거쳐 개발한 처우개선정책 모니터링 지표를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았으며, 결론적으로 ‘3. A그룹~E그룹으로 구분한 후 공개’ 방식으로 결정하였음. ○ 차년도 평가 관련 논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의견1</td><td>내년도에도 정책평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40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부분의 점수를 낮추어서 진행하였으면 함. 또한, 예산에 혜택을 받는 인원이나 금액, 또는 시설 수로 확인하였으면 함. 소규모 시설과 큰 규모의 시설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td></tr> <tr> <td>의견2</td><td>의견1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포함하려고 했는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했는가?’ 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td></tr> <tr> <td>의견3</td><td>예산 금액보다는 ‘소규모 시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주는가?’ 에 의의를 두었으면 함. 또한 시군 자체 처우개선비 중, 장기요양기관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점수를 높여주어야 함</td></tr> </tbody> </table>	연번	내용	1	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공개	2	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비공개	3	A그룹~E그룹으로 구분	4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지자체 3~5군데만 공개	5	별도 그룹은 지정하지 않고 토론회 자료집에 처우개선 모니터링 지표 자료 삽입	공개방식에 대한 위원 의견		의견1	처우개선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을 보완하자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상위그룹만 공개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의견2	A그룹~E그룹까지 등급을 나눈 후, 순위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	의견3	처우개선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 평균 미만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내용		의견1	내년도에도 정책평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40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부분의 점수를 낮추어서 진행하였으면 함. 또한, 예산에 혜택을 받는 인원이나 금액, 또는 시설 수로 확인하였으면 함. 소규모 시설과 큰 규모의 시설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의견2	의견1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포함하려고 했는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했는가?’ 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의견3	예산 금액보다는 ‘소규모 시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주는가?’ 에 의의를 두었으면 함. 또한 시군 자체 처우개선비 중, 장기요양기관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점수를 높여주어야 함
연번	내용																												
1	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공개																												
2	1위~31위까지 공개 후 점수 비공개																												
3	A그룹~E그룹으로 구분																												
4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지자체 3~5군데만 공개																												
5	별도 그룹은 지정하지 않고 토론회 자료집에 처우개선 모니터링 지표 자료 삽입																												
공개방식에 대한 위원 의견																													
의견1	처우개선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을 보완하자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상위그룹만 공개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의견2	A그룹~E그룹까지 등급을 나눈 후, 순위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																												
의견3	처우개선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 평균 미만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내용																													
의견1	내년도에도 정책평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40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부분의 점수를 낮추어서 진행하였으면 함. 또한, 예산에 혜택을 받는 인원이나 금액, 또는 시설 수로 확인하였으면 함. 소규모 시설과 큰 규모의 시설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의견2	의견1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포함하려고 했는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했는가?’ 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의견3	예산 금액보다는 ‘소규모 시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주는가?’ 에 의의를 두었으면 함. 또한 시군 자체 처우개선비 중, 장기요양기관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점수를 높여주어야 함																												

구분	회의 내용
	○ 차기 회의 ▪ 일시: 2024. 10. 7.(월) 12:30 (예정) ▪ 장소: 추후 안내 예정 (정책토론회 진행 후 회의 진행) ▪ 내용: 31개 시군 정책평가 토론회에 대한 평가회 진행
회의 사진	